

의안번호	2212039
의 퇴 인	정연욱의원
회 답 일	2025. 8. 8.
추계번호	25C398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2(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의2(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개정안은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 이후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재단의 인력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재단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안에 따른 각 사업 등은 대부분 실시중인

사업으로서 재단 설립 이후 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개정안에 따른 재단 사업과 현행 사업 비교

구분 (안 제13조의2제4항 ¹⁾)	현행 사업(2025년)
1.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국내, 국제) (2,405백만원) * 국내(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 전국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등) * 국제(한중일 이스포츠대회, 세계이스포츠대회 등)
2.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 이스포츠 전용 연습센터 운영(289백만원)
3. 이스포츠 단체 육성·지원	해당없음
4.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 이스포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190백만원)
5.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과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사업	- 종목선정기관 및 산업지원센터 지원(70백만원) - 이스포츠전시관 및 아카이브 운영(500백만원) - 지역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1,054백만원) - 이스포츠 지역 생태계 조성(800백만원) * 동호인 대회 및 이스포츠 대학리그 지원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1,000백만원) - 이스포츠 클럽 활동 프로그램 지원(800백만원) -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8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
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1) 안 제13조의2제4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